

2023.12.12.

연장근로제한(1주 12시간) 위반여부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

공인노무사 김재언

근로기준법에서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고,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50%로 계산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 5월 고용노동부는 1주 12시간 연장근로시 법 위반여부에 대한 해석을 법정근로시간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으로 해석 했으나,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1주 40시간에 대해서만 초과한 시간 즉, 1주 52시간 초과여부로 법 위반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입장

(사례4) 1일 15시간씩 1주에 3일 근무하여 1주 근로시간이 45시간이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데 근로시간 위반인가요?

- 근로기준법은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제53조제1항)하고 있으므로,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 이더라도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함**

<산정 예>

항목	1주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휴)
실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15 (7)	-	15 (7)	-	15 (7)	-	-
1주 총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45 (21)						

-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7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 3일간 연장근로 합계 21시간으로 1주 연장 한도 12시간을 초과

고용노동부, 2018.05,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31P

대법원 판결

법원 '주당 연장근로시간' 계산법

(단위: 시간)

항목	1주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실근로시간		12	11.5	14.5			11.5
연장근로시간		4	3.5	6.5			3.5
하급심 연장근로 계산	하루 연장근로시간 합산 17.5시간(연장근로 한도 초과)						
대법원 연장근로 계산	총근로시간 합계(49.5) - 법정근로시간(40) = 9.5시간						

자료: 법원 판결문

홍준표, 하루 21.5시간 일해도 된다? '주 단위 연장근로 계산' 대법원 첫 판결, 매일노동뉴스, 2023-12-12,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735>

➤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판결요지

- 1주 12시간 초과했는지 여부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였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가. 1주 단위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설정한 것은 ‘1주간’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함

나.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의 1주간 합계에 관하여 정한 규정은 없음

다. 가산임금 지급 규정은 연장근로를 억제하기 위한 취지인 것으로 연장근로를 금지하는 목적은 아니므로 가산임금 지급기준의 연장근로와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판단기준이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님

➤ 시사점

- 근무시간 개편안은 잠정보류 (사실상 폐기)되었으나, 해당 판결로 인력운영의 유연성이 확보된 것으로 보이며 1주 총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보임

- 향후 주4일제 근무 (10시간*4일),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운영 (1주 단위로 관리) 등 별도의 유연근무제 도입 없이 인력운영의 유연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 7길 65, B동 907호(갈현동, 상상자이타워)

주차 : 해당건물 B1~B4층 주차장

대중교통 이용 시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이나 정부과천청사역에서 버스 (과천지식정보타운 정류소에서 도보15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의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 또는 의견은 당 노무법인이나 소속 공인노무사의 공식적인 검토의견이 아니며, 일반적인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또는 소속 공인노무사의 공식적인 검토의견이나 자문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우측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관련하여 회원사가 아닌 경우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담 월~금 09:00~18:00
방문상담은 사전예약 필수

전화 02-6949-1227
팩스 02-6949-1678

양재모 대표 공인노무사
cpla21@hrhanalaw.com

김재언 공인노무사
cplaeony@hrhanalaw.com

황금별 공인노무사
gold@hrhanalaw.com

이정빈 공인노무사
cplabin@hrhanalaw.com